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50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보훈보상대상자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공원 입장료 감면 및 캠핑장(글램핑장, 캠프시설) 등의 이용료 기준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추가(안 제20조제1항제15호, 제16호 신설)

나. 경과규정이 만료(2021년 12월)된 제로페이 감면 규정 삭제(안 제20조제4항)

다. 글램핑장 및 캠프시설 등의 이용료 기준 마련 및 유형별 구분·정비(안 별표2)

라. 그 외의 문구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 : 개선사항 있음(일부반영)

※ 의견내용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공원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포함

※ 반영사항: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, 그 외의 감면 대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 향후 조례 개정 시 개선안 내용 반영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※ 작성자: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방지혜(☎ 2133-2017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”를 “법 제2조제3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”를 “법 제2조제5호”로 한다.

1. “공원관리청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·자치구청장을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제3호아목”을 “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본문 중 “공원단위”를 “공원 단위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항 중 “한다.다만”을 “한다. 다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

외의 부분 중 “설치 할”을 “설치할”로, “역사관련시설”을 “역사 관련 시설”로 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단계별집행계획”을 “단계별 집행계획”으로, “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2년”을 “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호가목 및 마목 중 “된다.다만,”을 각각 “된다. 다만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한다.다만”을 “한다. 다만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따른다.공원관리청은”을 “따른다. 공원관리청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및 이용료”를 “또는 이용료”로, “및 신용카드”를 “또는 신용카드”로, “있다.이 경우”를 “있다. 이 경우”로, 같은 항 후단 중 “적용하여 받고”를 “적용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공원시설을 3개월 이내로 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(시설이용료의 15 이내)을 예치하여야”를 “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공원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(시설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)을 예치하도록 하여야”로, “끝난”을 “완료된 것을 확인한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14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

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15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제24조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에”를 “시에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”를 “시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서울특별시 자치구”를 “자치구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

1. 체육시설

공원별	종 별		사용기준	금 액(원)		비 고
				체육경기	기타행사	
공통	잔디광장		1㎡당, 2시간	20~40		◦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◦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◦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% 할인, 어린이는 무료. (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% 이상일 때 적용)
	일반운동장(광장)			5~10	10~20	
	축구장	잔디	1회 2시간	120,000~156,000	300,000~390,000	
		인조잔디		55,000~82,500	110,000~143,000	
	풋살 경기장	10인용		25,000~32,500		
		6인용		15,000~19,500		
	테니스장	실외	1면당, 2시간당	8,000~16,000		
		실내	1면당, 2시간당	25,000~37,500		
	파크골프장	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4,000~6,000 3,000~4,000 2,000~3,000		◦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
	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		클럽(1회당, 개당)	1,000~2,000		
	국궁장		1일(3시간)	2,000~4,000		◦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% 할인 ◦청소년·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.
			1개월	20,000~40,000		
서울대 공원	성인야구장		1일	70,000~91,000	200,000~260,000	◦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◦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◦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◦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◦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
			3시간	42,000~54,600		
	리틀야구장		1일	35,000~46,000	100,000~130,000	
			3시간	21,000~27,300		

2. 휴양시설

공원별	종 별		사용기준	금 액(원)	비 고
공통	야영장 (캠핑장)	일반	야영장소 1회당	10,000~30,000	◦ 입소일(1박2일 기준)이 공휴일이 아닌 월~목요일인 경우 20인(야영장소 5면) 이상 이용시 30% 할인
		글램핑	야영장소 1회당	90,000~120,000	
		캠프시설	개소당 (바비큐존 등)	5,000~20,000	
		전기료	전기 1회당	3,000~5,000	
	야영장(캠핑장) 물품대여료		야영텐트 1회당	5,000~20,000	
			1인용매트 1회당	1,000~1,500	
서울대 공원	서울대공원 캠핑장	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2,000 ~ 4,000 1,500 ~ 3,000 1,000 ~ 2,000	

3. 교양시설

공원별	종 별	사용기준	금 액(원)	비 고
공통	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◦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◦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
	공연장 (복합문화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◦일(8시간) 단위 계산 ◦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◦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한다. ◦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-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-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
	야외무대	2시간당	100,000~150,000	
	청소년 체험의 숲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8,000~12,000 5,000~8,000 3,000~5,000	◦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 ◦키 140cm 이상

4. 기타

공원별	종 별	사용기준	금 액(원)	비 고
공통	사진·영상 촬영녹화	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	13,000~19,500 6,500~13,000	◦영리행위에 한함. 다만,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
	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	1회당 (1일당)	1,000~20,000	
	입장권 발매행사	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	입장권 발매총액의 10~15%	◦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◦장소 이용료, 점용료는 별도 징수
남 산 공 원	차량통행료	승합자동차 (16인승이상)	3,000 ~ 6,000	◦순환버스·시티투어버스·긴급 및 통행허가차량·장애인콜택시·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
		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 (15인승이하)	2,000 ~ 4,000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공원관리청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·자치구청장을 말한다. 2.·3. (생 략) 4. “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. 5. “녹지”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---------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---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. 2.·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--- 법 제2조제3호----------. 5. ------ 법 제2조제5호----------.
제3조(도시공원의 세분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	제3조(도시공원의 세분)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) ① (생 략)	제5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대단위공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공원 단위----------. ----------시장----------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0,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다만 공원관리청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③ ----------한다. 다만 ---------.
④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④ ----------설치할 ---------- 역사 관련 시설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점용허가대상 공원) 공원관리청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9조(점용허가대상 공원) ----------.
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2년이 경과한 공원	3. ----------단계별 집행계획----------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----------
4.·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)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.	제12조(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	2. ----------
가.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.다만,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가. ----------된다. 다만, ----------.
나.·다. (생 략)	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라.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 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	라. ----------

여야 한다.다만,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--- 한다. 다만, ----------
마.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마. ---------- 된다. 다만, ----------
바. ~ 자. (생 략)	바. ~ 자. (현행과 같음)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공원입장료 및 이용료) ① (생 략)	제15조(공원입장료 및 이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	② ---------- 따른다. 공원관리청은 ----------

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	----------.
③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.이 경우 환율은 서울특별시 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,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	③ ---------- 또는 이용료---------- 또는 신용카드---------- 있다. 이 경우 ---------- 적용하고----------.
④ 공원시설을 3개월 이내로 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(시설이용료의 15 이내)을 예치하여야 하며,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.	④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공원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(시설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)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---------- 완료된 것을 확인한 ----------.
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	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----------.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(다만, 서울대공원은 경기도	14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----------

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.)	----------
<신 설>	15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신 설>	1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별표 1의 입장료나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.	<삭 제>
1. 별표 1의 입장료 :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. 다만,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	

2.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 :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	
제24조(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) 법 제16조제4항,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24조(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) ---------- 시에 ----------.
제32조(공원·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) ①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의 사무관할 구분은 별표 5와 같다.	제32조(공원·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) ① ---------- 시와 ----------.
② 공원 또는 녹지의 취득·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1항의 사무관할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. 다만,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자치구----------.

[별표 2]

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

공원별	종 별		사용기준	금 액(원)		비 고
				체육경기	기타행사	
공 통	잔디광장		1㎡당, 2시간	20~40		◦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◦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◦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% 할인, 어린이는 무료. (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% 이상일 때 적용)
	일반운동장(광장)			5~10	10~20	
	축구장	잔디	1회 2시간	120,000~156,000	300,000~390,000	
		인조잔디		55,000~82,500	110,000~143,000	
	풋살경기장	10인용		25,000~32,500		
		6인용		15,000~19,500		
	테니스장	실외	1면당, 2시간당	8,000~16,000		
		실내	1면당, 2시간당	25,000~37,500		
	파크골프장	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4,000~6,000 3,000~4,000 2,000~3,000		◦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
	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		클럽(1회당, 개당)	1,000~2,000		
	야영장(캠핑장)		야영장소 1회당	10,000~30,000		◦입소일(1박2일 기준)이 공휴일이 아닌 월~목요일인 경우 20인(야영장소 5면) 이상 이용시 30% 할인
			전기 1회당	3,000~5,000		
	야영장(캠핑장) 물품대여료		야영텐트 1회당	5,000~20,000		
			1인용매트 1회당	1,000~1,500		
	시진·영상 촬영녹화		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	13,000~19,500 6,500~13,000		◦영리행위에 한함. 다만,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
	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		1회당 (1일당)	1,000~20,000		
	강의실		1㎡당, 1시간당	200~300		◦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◦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

[별표 2]

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

1. 체육시설

공원별	종 별		사용기준	금 액(원)		비 고
				체육경기	기타행사	
공통	잔디광장		1㎡당, 2시간	20~40		◦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◦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◦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% 할인, 어린이는 무료. (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% 이상일 때 적용)
	일반운동장(광장)			5~10	10~20	
	축구장	잔디	1회 2시간	120,000~156,000	300,000~390,000	
		인조잔디		55,000~82,500	110,000~143,000	
	풋살경기장	10인용		25,000~32,500		
		6인용		15,000~19,500		
	테니스장	실외	1면당, 2시간당	8,000~16,000		
		실내	1면당, 2시간당	25,000~37,500		
	파크골프장	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4,000~6,000 3,000~4,000 2,000~3,000		◦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
	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		클럽(1회당, 개당)	1,000~2,000		
	국궁장		1일(3시간)	2,000~4,000		◦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% 할인 ◦청소년·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.
			1개월	20,000~40,000		
서울대공원	성인야구장		1일	70,000~91,000	200,000~260,000	◦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◦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◦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◦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◦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
			3시간	42,000~54,600		
	리틀야구장		1일	35,000~46,000	100,000~130,000	
			3시간	21,000~27,300		

2. 휴양시설

공원별	종 별		사용기준	금 액(원)	비 고
공통	야영장(캠핑장)	일반	야영장소 1회당	10,000~30,000	◦입소일(1박2일 기준)이 공휴일이 아닌 월~목요일인 경우 20인(야영장소 5면) 이상 이용시 30% 할인
		글램핑	야영장소 1회당	90,000~120,000	
		캠프시설	개소당 (버버큐존 등)	5,000~20,000	
		전기료	전기 1회당	3,000~5,000	
	야영장(캠핑장) 물품대여료		야영텐트 1회당	5,000~20,000	
			1인용매트 1회당	1,000~1,500	
서울대공원	서울대공원 캠핑장	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2,000 ~ 4,000 1,500 ~ 3,000 1,000 ~	

				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
	공연장 (복합문화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◦일(8시간) 단위 계산 ◦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◦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. ◦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
	야외무대	2시간당	100,000~150,000	
	청소년 체험의 숲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8,000~12,000 5,000~8,000 3,000~5,000	◦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 ◦ 키 140cm 이상
	국궁장	1일(3시간)	2,000~4,000	◦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% 할인 ◦청소년·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.
		1개월	20,000~40,000	
	입장권 발매행사	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	입장권 발매총액의 10~15%	◦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◦장소 이용료, 점용료는 별도징수
남산공원	차량통행료	승합자동차 (16인승이상)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 (15인승이하)	3,000 ~ 6,000 2,000 ~ 4,000	◦순환버스·시티투어버스·긴급 및 통행허가차량·장애인콜택시·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무료
서울대공원	성인 야구장	1일	70,000 ~ 91,000 / 200,000 ~ 260,000	◦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
			2,000	

3. 교양시설

공원별	종 별	사용기준	금 액(원)	비 고
공통	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◦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◦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
	공연장 (복합문화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◦일(8시간) 단위 계산 ◦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◦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. ◦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-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-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-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
	야외무대	2시간당	100,000~150,000	
	청소년 체험의 숲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8,000~12,000 5,000~8,000 3,000~5,000	◦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 ◦키 140cm 이상

4. 기타

공원별	종 별	사용기준	금 액(원)	비 고
공통	사진·영상 촬영녹화	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	13,000~19,500 6,500~13,000	◦영리행위에 한함. 다만,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
	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	1회당 (1일당)	1,000~20,000	
	입장권 발매행사	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	입장권 발매총액의 10~15%	◦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◦장소 이용료, 점용료는 별도 징수
남산공원	차량통행료	승합자동차 (16인승이상)	3,000 ~ 6,000	◦순환버스·시티투어버스·긴급 및 통행허가차량·장애인콜택시·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무료
		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 (15인승이하)	2,000 ~ 4,000	

		3시간	42,000 ~ 54,600		◦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 (토, 공휴일은 제외) ◦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◦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◦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
	리틀 야구장	1일	35,000 ~ 46,000	100,000 ~ 130,000	
		3시간	21,000 ~ 27,300		
	서울대공원 캠핑장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2,000 ~ 4,000 1,500 ~ 3,000 1,000 ~ 2,000		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(요금의 감면) 제1항에 '보훈보상대상자', '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'에 대하여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함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시행기간: 비용은 조례 공포·시행 예정인 2025 3월 이후 발생

○ 면제시설 및 면제금액

- 서울대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

대 상 시 설	입장료
서울대공원	동 물 원 : 5,000원(성인기준) 테마가든 : 2,000원(성인기준)

○ 예상 무료 입장비율

〔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등 입장 비율 적용 : 5.4% 〕

$$\frac{\text{6,478명 (서울대공원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등 무료입장객 수)}}{\text{120,052명 (서울 국가유공자,독립유공자 등 수)}} = 5.4\%$$

※'23.12월 말 기준

- 감면인원: 연 23,925명

〔{서울시 보훈보상대상자 등(1,788명), 서울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(441,261명)} × 5.4%〕

- 감 면 액: 연 83,738천원(감면대상 23,925명 × 3,500원)

※ 관람료는 성인·청소년·어린이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동물원(5천), 테마가든 입장료(2천)의 50% 적용

○ 비용추계 산식

- 1차연도: 연 감면규모(83,738천원) × 306일/365일 = 70,202천원

※ 2025. 3월 이후 공포 예정으로 1차 연도는 306일('25.3~12, 10개월) 적용

- 2차연도 이후: 연 감면규모 83,738천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수입	○ 면제입장료	70,202	83,738	83,738	83,738	83,738	405,154
	소계(b)	70,202	83,738	83,738	83,738	83,738	405,154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-	-	-	-	-	-
시비	지방세수입	70,202	83,738	83,738	83,738	83,738	405,154
	세외수입	-	-	-	-	-	-
	지방채 등	-	-	-	-	-	-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70,202	83,738	83,738	83,738	83,738	405,154

5. 덧붙이는 의견: 없음

6. 작성자: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 방지혜 (☎2133-2017)